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53
----------	------

2020년 9월 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나.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9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제2호).

- 2)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안 제14조제7항 신설).
- 3) '행상 또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함 (안 제17조제1항제4호).

### 3. 참고사항

- 1)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이 재 호]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의견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금번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은 크게 7개 평가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조례에는 차별적 언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반환권 제약 등 3개 개정 권고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첨부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내용 및 목록. 참고

- 차별적 언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순화어임 (안 제17조제1항제4호)
-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안 제14조제2항제2호)
- 반환권 제약: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 보장 (안 제14조제2항제7호 신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적 언어에 대한 수정, 장애인 문화권 확보, 반환권 확보 등 대안용어 사용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2)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대한 의견

- 법령 용어와 표현은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하므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자(者)”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음.  
(제14조제1항, 제2항제6호)
- 그러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자(者)’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 뿐 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음<sup>1)</sup>.
- 한강공원의 시설물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자의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자’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임.

1) 「법령입안 심사기준」 2017. 722쪽

〈 불임 2 〉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

□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연 번	인권영향평가			권고사유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총 계				96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개 용어)	계		50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부모	→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소외계층· 우법지역	→	취약계층· 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저출산	→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2	편견·선입견에 근거 하여 대상을 한정	계		5		
		학생	→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 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3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8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자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미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5	반환권 제약			8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	
6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7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신상의 장애」 문구 삭제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알기쉬운 법령정비에서 ‘자(者)’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 뿐 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53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 내용 중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자(者)”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자(者)’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애용을 제외하도록 함.

## 2. 주요 골자

- 안 제14조제1항 및 한 제14조제2항제6호의 “자(者)”를 “사람”으로 쓰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기존 대로 사용함.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사람”으로 한 것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본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u>자</u>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국가유공자·의사상자·<u>장애인</u>·65세 이상 노인·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 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li> <li>3. ~ 5. (생 략)</li> <li>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u>자</u>.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li> </ol> <p>③ ~ ⑥ (생 략)</p>	<p>제14조(이용료) ① ----- ----- ----- <u>사람</u>----- ----- -----.</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u>----- ----- ----- -----</li> <li>3. ~ 5. (현행과 같음)</li> <li>6. ----- ----- ----- ----- ----- ----- <u>사람</u>. ----- ----- ----- -----</li> </ol>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개정안과 같음)</li> <li>3. ~ 5. (현행과 같음)</li> <li>6. (현행과 같음)</li> </ol> <p>③ ~ 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204 271 352 304">&lt;신 설&gt;</p> <p data-bbox="172 495 560 685">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 data-bbox="204 719 464 752">1. ~ 3. (생 략)</p> <p data-bbox="172 786 560 864">4. <u>행상 또는 노절</u>에 의한 무단 상행위</p> <p data-bbox="204 898 480 931">5. ~ 15. (생 략)</p> <p data-bbox="172 965 344 999">② (생 략)</p>	<p data-bbox="592 271 986 461"><u>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u></p> <p data-bbox="592 495 986 573">제17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p> <p data-bbox="624 719 970 752">1. ~ 3. (현행과 같음)</p> <p data-bbox="624 786 986 864">4. <u>거리가게</u>-----</p> <p data-bbox="624 898 986 931">5. ~ 15. (현행과 같음)</p> <p data-bbox="592 965 855 999">②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16 271 1310 304">⑦ (개정안과 같음)</p> <p data-bbox="1016 495 1410 573">제17조(금지행위)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48 719 1394 752">1. ~ 3.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48 786 1334 819">4. (개정안과 같음)</p> <p data-bbox="1048 898 1410 931">5. ~ 15.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16 965 1278 999">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행상 또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이용료)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2. 국가유공자·의사상자·<u>장애인</u>·65세 이상 노인·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p> <p style="padding-left: 20px;">3. ~ 6. (생략)</p> <p>③ ~ ⑥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lt;신설&gt;</u></p> <p>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 3.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4. <u>행상 또는 노점</u>에 의한 무단 상행위</p> <p style="padding-left: 20px;">5. ~ 15.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u>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u>-----</p> <p style="padding-left: 20px;">3.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u></p> <p>제17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4. <u>거리가게</u>-----</p> <p style="padding-left: 20px;">5. ~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